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칙

제 정 2021. 06. 28.

개 정 2024. 02. 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관 제11조와 관련하여 공인회계감사를 수행할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인”이라 함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만을 말한다.
2. “회계감사”라 함은 회계감사인이 연구원이 작성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외부인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실장으로 한다.<개정 2024.2.23.>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회계감사인 선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하고, 회의개최일 이전에 의안 및 회의개최계획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결과에 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기준) ①평가는 수행능력평가, 직무수행계획평가, 감사보수평가로 구분한다.

②수행능력평가와 직무수행계획평가는 선임위원회 위원들이 평가하고, 보수평가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계약담당이 평가한다.

③평가기준은 “별표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를 적용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7조(회계감사인 선임) ①연구원은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회계감사인 선정기준」에 따라 회계감사인 추천대상자 통보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4.2.23.>

②연구원 회계감사인의 선임은 제6조에 따른 평가 합산점수가 고득점자로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회계감사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직무수행계획평가점수가 높은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고, 직무수행계획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별표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상 감사직무수행계획의 연구원 사업이해도 및 제안의 타당성, 회계 감사자문·교육 및 부가서비스 제공내용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③최고득점자와 계약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 득점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④제안서 제출자가 1인 이하일 경우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선임한다.

제8조(계약체결) ①연구원은 회계감사인을 연속하는 매 3개 회계연도마다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감사의 대외신뢰도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

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②회계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새로운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체결 통보) 연구원은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2.23.>

제10조(회계감사인의 변경) ①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회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계감사인이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연구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계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3. 회계감사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4. 회계감사인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5. 회계감사인이 연구원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회계감사인이 기타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감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과 재선임 계획 등을 전북 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2.23.>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위원회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누설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회계감사인 선정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칙

〈개정 2024.2.23.〉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4.2.23.〉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평점					비고
			A	B	C	D	E	
감사 수행 능력 (35)	① 업 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마감일까지의 업력	5	15년 이상 (5)	10년 이상 (4)	5년 이상 (3)	3년 이상 (2)	3년 미만 (1)	위원 평가
	② 공인회계사 수 - 선정 해당년도 제출 마감일 기준 공인 회계사 수 (수습 공인회계사 제외)	5	20명 이상 (5)	15명 이상 (4)	10명 이상 (3)	5명 이상 (2)	5명 미만 (1)	
	③ 감리결과 지적사항 - 회계법인 징계 등 조치사실 확인원	5	0건 이하 (5)	3건 미만 (4)	6건 미만 (3)	10건 미만 (2)	10건 이상 (1)	
	④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감사실적	20	10건 이상 (20)	8건 이상 (18)	6건 이상 (16)	4건 이상 (14)	4건 미만 (12)	
감사 직무 수행 계획 (55)	⑤ 참여인력 - 감사일정 중 투입인원 수, 구성원 등에 대한 상대평가	10	매우 적절 (10)	적절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위원 평가
	⑥ 투입시간(1인당) - 감사일정 중 투입시간, 집중도에 대한 상대평가	10	매우 적절 (10)	적절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⑦ 연구원 사업이해도 및 제안의 타당성 - 연구원 사업이해도 및 제안 평가	20	매우 적절 (20)	적절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 미흡 (12)	
	⑧ 회계 감사자문·교육 및 부가서비스 제공내용 - 회계 관련 자문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 실무자 대상 교육지원 계획 등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감사 보수료 (10)	⑨ 감사보수료	10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계약 담당
합 계		100						

<별지 제3호 서식>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의결서

1. 일 시 :
2. 장 소 :
3. 출석현황 : 명
 - 가. 출석위원 :
 - 나. 불참위원 :
 - 다. 기타 참석자 :
4. 안 건 :
5. 회의내용

--

6. 심의결과

의안번호	안 건	심의결과

위 심의·결정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석위원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